

# 도수치료 관리시스템(포털) 사용안내 (치료사·접수 담당용)

적용: 2026년 7월 1일

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도수치료 관리시스템(포털) 사용매뉴얼」(심평원 공지 brdBltno=12133, 2026.6.29).

원본(화면 캡처 포함): 자료/관리급여\_고시모음/2026-06-29\_심평원\_질의응답수정/6\_관리시스템\_사용자 매뉴얼\_최종.pdf

## 핵심 원칙

- 도수치료를 요양급여로 산정하려면 시행 시점에 이 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한다. 미제출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.
- 다른 기관이 같은 회차(주 2회 초과분, 24회째 등)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기관은 제출·인정이 불가하다. 시행 즉시 제출이 원칙.
- 등록 전 「횟수보기」로 환자의 전국 누적 횟수를 먼저 확인하면 한도 초과를 예방할 수 있다.

## 1. 접속

- 심사평가정보 웹포털 <https://ef.hira.or.kr> 접속
- 「공동인증서 로그인」 선택 후 인증서 암호 입력
- 인증서는 상용 SW 인증서 또는 건보공단 발급 공동인증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 후 사용

## 2. 도수치료 등록 (진료정보 제출)

화면경로: 「추나·척약·도수치료」 → 「도수치료」 → 「도수치료 등록」

입력 항목(A. 기본정보)

- 환자 성명
- 환자 주민등록번호(전산관리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포함)
- 진료일자(도수치료 실시일)
- 환자등록번호(원내 관리번호)
- 예외제출: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·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사 판단상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'Y', 그 외 'N'
- 보험자구분: 건보공단 자격조회시스템에서 환자 자격을 조회한 뒤 선택
- 의료급여종별구분: 보험자구분이 의료급여인 경우 필수 선택
- 공상구분: 해당 없으면 '0'(정상건) 선택

동작

- 주민등록번호·진료일자·보험자구분을 입력하면 도수치료 실시횟수가 자동 조회되고, 환자의 연간 도수치료 내역(전 의료기관)이 함께 표시된다.
- 급여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제출 불가 메시지가 출력되며 급여 인정이 안 된다.
- 저장하면 심평원으로 진료정보가 제출된다.

### 3. 도수치료 조회

화면경로: 「추나·접착·도수치료」 → 「도수치료」 → 「도수치료 조회」

- 조회 조건: 진료일자(필수), 생년월일, 보험자구분, 예외여부, 주민등록번호, 환자명, 급여여부(횡수기준 해당 Y/N), 삭제여부
- 우리 기관이 제출한 내역만 조회된다.
- 결과는 Microsoft Excel 파일로 저장 가능

### 4. 횡수보기 (전국 누적 횡수 확인)

- 「도수치료 조회」 화면의 「횡수보기」 버튼으로 우리 기관 외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이력을 조회한다.
- 주민등록번호와 진료일자(종료일)을 필수 입력(종료일 기준 해당 연도 실시횡수 조회)
- 우리병원 진료 여부, 예외제출 여부가 함께 표시된다.

### 5. 제출내역 삭제

- 「도수치료 조회」에서 삭제할 행을 더블클릭 → 진료정보 팝업 출력 → 우측 상단 「삭제」 클릭
- 이미 삭제된 정보는 「삭제」 버튼이 비활성화된다.
- 삭제 기한: 월~목 진료건은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, 금·토·일 진료건은 당일(해당 월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). 기한 이후 삭제는 심평원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(033-739-0313)에 요청.

### 참고

- 시스템 제출 대상 자격: 건강보험·의료급여·보훈·자동차보험·산재보험·건강보험 무자격자는 제출 대상이 아니다.
-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요양급여 대상 도수치료 실시 시 시스템 제출 의무가 있다.
- 전송 오류 시 정상 제출될 때까지 재전송한다.